

제안번호	제 69 호
의결년월일	1996. (제 회)

서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출자	서산시장
제출년월일	1996. 4. 4.

서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69
----------	----

제출년월일 : 1996. 4. 4.
제출자 : 서산시장

1. 제안이유

- 현재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법적근거 수도법 제32조제2항을 토대로하여 마련된 환경부의 간이상수도 관리 준칙안을 기초로 서산시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과거에는 간이상수도를 "리,통개발 위원회"에서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장이 관리토록 규정함 (안 제2조2항)
- 나. 필요에 따라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간이상수도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서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 ②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의 시장을 말한다.
- ③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 ④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서산시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 2 장 간 이상수도의 관리

제4조(간이상수도관리 기록·보존)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등 급수 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시설물의 운전, 소독, 경미한 보수)를 위탁 관리한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관리자는 별표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보수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 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요 금 징 수

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 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사 용 자 대 표 협 의 회

제13조(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협회의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 ①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 ②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 ③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 ④ 제6조에 의한 관리의 위탁사항
- ⑤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개최한다.

-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산시간이상수도등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양식 (제4조제2항관련)

관리번호	시(군) . 제 호											
구분	내역											
일반현황	위치	도		시·군		읍·면		리		마을·부락		
	관리위원장	성명				전화번호	() -					
	중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부자현황	총부자액 (만원)	구분	내역	일자	국고보조		지방비		주민부담	기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최초사업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현황	수원의종류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										
	시설의유형	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시설내역	구분	제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암호				불량					
			집수정1						심도 : m			
			집수 2						심도 :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										
시설내역		구분	제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암호				불량						
		소독시설										
		취전지										
	여과지											
배수지												
구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정 중어(㎡)	
	관	중	직	검	연	장	관	중	직	검		연
소계												

	송배수관로	소 계		㎡	㎡				
		소 계		㎡	㎡				
		총 계		㎡	㎡			총 계 :	㎡
급수 현황	계획	급수인구	명	급수기구	기구	1인당1일급수량	리터		
	현재	급수인구	명	급수기구	기구		리터		
	제한 급수	1차 : . . . ~ . . .		2차 : . . . ~ . . .		3차 : . . . ~ . . .		계 : 일간	
수질 검사	검사 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전	검사기관	(개함육)			
	합격 여부				검사일시				
개함 내역	개함 일자	개함시실명	소요액(만원)	시공자	개함내용				
	. . .								
	. . .								
수원 이전	이전 사유			이전 일자	. . .	소요비용	만원		
	이전 위치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회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간이상수도 정기점검일지 양식

(제 5 조 제 1 항 관련)

관리번호	시(군) 제 호					
조사 및 확인항목		검 사 원		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월	일	특 기 사 항	조 치 결 과	
시설의 청소	소 독 기					
	취 수 원					
	배 수 지					
	여 과 지					
	관로 파손					
오염원 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시군담당자						

주 1 : 수질검사 결과 사본을 첨부할 것

단, 수질검사는 매 3월마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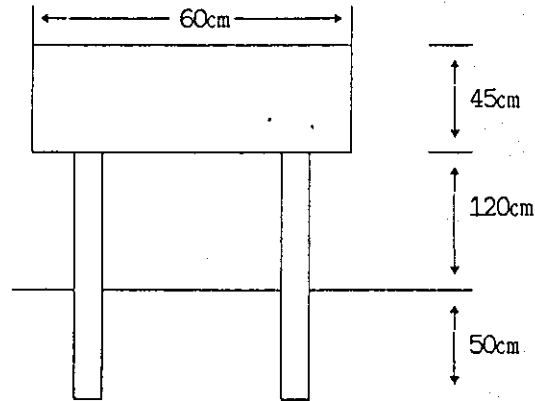
간이상수도 수질점검대장 양식

(제 5 조 제 2 항 관련)

관리번호	시(군) 제 호	점검일자 : 19 . . .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점 검 자	확 인 자
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 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				
7. 기타 조치사항				

[별표 제1] 간이상수도 안내판 (제7조 1항 관련)

간이상수도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10mm 내외의 합판

바탕 색 : 흰 색

글씨 : 청 색

2. 내용문

알림

1. 이곳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상수도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시군 수도과 (Tel :

서산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1항중 "연 1회 이상"을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 2항중 "수질이상 발견시등"을 "수질이상, 누수등"으로 한다.

제16조 1항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자 가구의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신. 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u>연 1회이상</u>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p> <p>제15조 ②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 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p> <p>제16조 ① 1~2호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신설)</p>	<p>제5조(점검) ① ----- 연 <u>2회이상</u></p> <p>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p> <p>제15조 ② ----- 수질이 상, 누수 -----</p> <p>제16조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p> <p>3. 사용자 가구의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p>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996. 6. 1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 일자 : 1996. 4. 6
- 나. 제출 자 : 서산시장
- 다. 회부 일자 : 1996. 4. 8
- 라. 상정 일자 : 1996. 4. 15
- 마. 보류의결일자 : 1996. 4. 15
- 바. 수정발의상정 : 1996. 6. 17

2. 수정이유(수정발의자 : 최광식의원)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간이상수도 관리준칙안을 기초로 제정하였으나 내용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수정주요골자

- 조례 제5조 1항중 '연 1회 이상'을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회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제15조 2항중 '수질이상 발견시등'을 '수질이상, 누수등'으로 하고,
- 제16조 1항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자 가구의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수정안대로 가결